## 사업장폐기물처리 위 · 수탁계약서

하기 쌍방을 계약편의상 위탁업자를 "갑, 수집·운반업체를 "을", 처리업체를 "병"이라 칭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갑"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을"에게 수집 · 운반 의뢰하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처리업체인 "병"에게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 조 "병"은 "갑"의 사업장폐기물을 "을"로부터 수탁받아 폐기물관리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양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수집하여 "병"에게 적법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제 3 조 "갑" 자신이 임의로 불법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갑"이 책임지며 "을", "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병"에게 수집·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처리업자에게 불법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 제 4 조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시는 "갑", "을" 쌍방이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시 폐기물의 혼합, 수분함량 및 기타 유해물질의 기준초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 확인 및 분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을"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병"은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 5 조 "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로 종류별, 성**상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제 6 조 "갑"은 "을"에게 사업장폐기물 수집 · 운반 의뢰하여 "병"에게 처리할시 관할관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 처리카드를 빈칸없이 정확히 작성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제 7조 계약기간중 "을", "병"은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조 처리비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과 동시에 "갑"이 수집·운반비는 "을"에게, 처리비는 "병"에게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을"이 수집·운반비, 처리비를 "갑"에게 일괄청구하고 "병"은 처리비를 "을"에게 청구 정산할 수 있다.
- 제 9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는 아래표의 기재내용대로 정한다.

폐기물 종류	성상	단위	수량	급 액			71 -1 -1 -1			
				수집 · 운반	처 리 비	합 계	저리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H]	1/
Jalej Mar	2/2	MS		1000	2 t.000	30,000	企			_
										_
					-					_
× .						/				

제10조 본 계약은 →0// 년 6 월 / 일부터 →0/〉년 † 월2/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내에라도 처리비 상승요인이 있을시는 쌍방합의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계약종료 후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갑"은 "을"에게 운반 위탁한 사업장폐기물이 "병"에게 적법하게 인계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통보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일반상례를 준하며 "갑"과 "을 "은 본 계약을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후일에 증하기 이하여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위탁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첫호리 332-1

회사명:

(주)원익아이피에

대표자:

대표이사 이 무

"을" 수집·운반업체

주 소경기도 핑텔기 도입동 248-8

회사명 : 의 시

대표자:

TEL:

TEL: 03/-66t-3463 0/0-6434-

"병" 중간처리업체

주 소: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332

회사명:대성산업(주)환경사업부

대표자:정 광

TEL: 031)374-4859